

「구미시 4-H활동지원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5년 10월 2일

나. 제출자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5년 10월 2일

라. 상정일자: 2025년 10월 16일

제29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영 혁

나. 제안이유

- 구미시 4-H활동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제3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고 조례 내용을 정비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기금의 존속기한 5년 연장(안 제2조)
- 위원회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10조)
-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(안 제2조~제7조, 제11조~제14조)

라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임 호 규

○ 본 조례안은

- 구미시 4-H활동지원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제3항을 근거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안 제2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이 ' 25년 12월말로 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구미시 4-H단체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현재 기금의 용도가 단순히 장학금·여비·운영비 지급으로 해당부서에서는 내실있는 기금 사용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지원사업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
5. 토 론 요 지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

- 관련부서에서는 타지자체의 4-H 관련 기금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2030년 이후 해당 기금의 존속 혹은 폐지에 대하여 검토해보아야 할 것임.
- 또한, 현재 4-H단체 및 활동에 대해 홍보가 전무하여 그 의미가 유명무실해지고 있으므로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
- 현재 우리시 기금으로 사용중인 교육비,여비를 시예산에도 동일하게 편성·지출하고 있으므로, 관련부서에서는 기금의 목적과 용도 등을 면밀하게 따져 사용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임.

7. 심 사 결 과: 원안가결